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184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10. 5.)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납세자에게 혼란 및 불편을 줄 수 있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8. 17. ~ 9. 6.(20일),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¹⁾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민원 처리 절차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 제16조²⁾에 맞춰 안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항 및

-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제정됨.
- 2011년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임의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독립성 미흡 등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하여 2017년 12월 26일 공포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음.
 -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에 대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로,
 - 성북구에서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였음.

2) 표준안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항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종결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2회 이상 반복 → 3회 이상 반복
-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 →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
-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 →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복되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고려하여 납세자 보호 관련 규정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